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00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기술 대여 세액감면율 상향 및 기술 사업화 세액감면 신설 (박범계 의원안)	3

I. 개요

1. 박범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00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범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9. 13.

(3) 회 부 일 : 2024. 9.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특허에 기반하여 생산된 제품의 매출에 대한 특례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고 국내투자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 대여 촉진을 위하여 현행 100분의 25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허를 사업화하여 발생한 제품의 매출 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조세회피와

혜택 편중을 막기 위해 대기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벤처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기술 대여 세액감면율 상향 및 기술 사업화 세액감면 신설 (박범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 ○ 기술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 중소·중견기업 - 감면율: 특허권 등 이전소득의 50% - 적용기한: 2026. 12. 31. ○ 기술 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 중소·중견기업 - 감면율: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25% - 적용기한: 2026. 12. 31. ○ <신 설>	☐ 기술이전·취득 및 사업화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 ○ (현행과 같음) ○ 기술 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 중소·중견기업 - 감면율: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 - 적용기한: 2026. 12. 31. ○ 기술 사업화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 중소기업, 벤처기업 - 감면율: 자체 연구개발하거나 내국인 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권 등*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판매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30%(벤처기업은 50%)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전 또는 대여받은 특허권등은 제외 - 적용기한: 2028. 12. 31.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박범계의원안 2024. 9. 13. 발의(의안번호 4009)

☐ 개정안은 기업의 R&D를 장려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

대여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상향하고, 기술 사업화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신설하려는 것임.

□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음.

①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제12조제1항)은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의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②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제12조제3항)은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25%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체 연구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임.

기술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1998년 세법개정으로 2003년 말을 적용기한으로 하여 신설되었으며, 당시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적용대상이었음. 그 후, 2005년 말까지 한 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된 후 감면혜택의 90% 이상이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이유 등¹⁾으로 폐지되었음.

2014년부터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도입되어 2015년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 후, 현재까지

1)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검토보고, 2005. 11.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있음.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2015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도입되었으며, 2021년 세법개정으로 세액감면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음.

2023년 조세지출은 2019년과 동일한 6억원이고, 2024년 및 2025년 조세지출은 4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소득세	0.3	0.1	0.1	0.9	0.7	0.8	0.8
법인세	6	6	2	5	5	3	3
합 계	6	6	2	6	6	4	4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기술 사업화 세액감면을 신설함으로써, 기술 사업화 투자에 대한 세후수익률을 높여 기업의 R&D와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현행 세제지원 제도는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0조) 등을 통해 R&D 투자 단계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나, R&D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현재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

(patent box) 제도²⁾를 운영하여 R&D와 기술사업화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주요국의 특허박스 도입 현황]

국가	도입시기	대상소득	일반 법인세율	특허박스 세율
아일랜드	1973년	제품매출, 대여	12.5%	6.25%
프랑스	2000년	양도, 대여	33%	15%
네덜란드	2007년	제품매출, 양도, 대여	25%	5%
벨기에	2008년	제품매출, 양도, 대여	34%	6.8%
영국	2013년	제품매출, 양도, 대여	19%	10%

자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 2020. 3.

둘째, 다국적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특허권 출연을 하는 등 국내 투자를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여 산업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EU에서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제도 미도입국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특허박스 제도 도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10.8%로 EU 평균인 3.8%를 상회했지만, 미도입국은 증가율이 △8.0%였음.³⁾

셋째, 기술대여 세액감면율을 50%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기술대여를 장려하여 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음.

2) 특허박스 제도는 기업의 전체 순이익 가운데 지식재산권(IP)에 의해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기업의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하여 도입됨.

3) 한국경제연구원, '주요국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2017. 2.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5.2%로 미국 3.6%, 일본 3.4%, 독일 3.1%보다 높은 수준임. 즉, 연구개발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기술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고한 중소기업은 2023년 6개, 2022년 8개, 2021년 7개에 불과함. 또한, 중소기업은 기술 획득방법 중 자체개발이 7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 기업으로부터 획득하는 경우가 5.9%로 낮은 수준임.⁴⁾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제품판매 소득 중 특허권 기여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워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특허권을 이용한 재화나 용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특허권의 기여 정도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둘째, 현행 제도상 R&D에 대해 세액공제가 지원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R&D 성과물의 사업화에 대해서도 조세지원을 하면 R&D 비중이 큰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이 집중되어 산업 및 기업 간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⁵⁾

중소기업은 R&D 세액공제(법 제10조)를 통해 일반 기술은 25%, 신성장·원천기술은 최대 40%, 국가전략기술은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2020.7. p.22

5) 입법조사처, '특허박스제도 도입 관련 입법과제', 2018. 8.

셋째,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허권 등에 대한 사업화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해주면 세입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 특허출원 건수가 24만 3,310건으로 2019년 대비 2만 4,335건 증가했음.

[연도별 특허출원 건수]

(단위: 건)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218,975	226,759	237,998	237,633	243,310

자료: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또한, 2023년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22,288건을 기록하여 중국(69,610건), 미국(55,678건), 일본(48,879건)에 이어 세계 4위였음.

외국의 사례를 보면 특허박스제도에 따른 사업화의 촉진으로 수익이 늘어나 세원이 증가하지만, 기업의 실질세율이 낮아지며 특허박스제도 도입 이후 조세수입이 대부분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음.⁶⁾

문 의 처

02)6788-5155

6) 한국은행 경기본부, '특허박스(Patent Box)제도의 현황 및 국내 도입방향', 2014. 4.